

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5가단22878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A

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7. 10. 19.

판결 선고2017. 11.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한 신탁계약 및 2014. 4. 1.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 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등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29. 신용보증원금 2,800만 원(그 후 20,321,336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 2007. 9. 28.까지(그 후 2015. 9.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6. 9.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5. 6. 30.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1. 중소기업은행에 20,942,7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89,410원이고, 대지급금은 195,97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A는 2014. 3. 11. 피고 코리아신탁과 사이에, 대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 피고 A, 수탁자 피고 코리아신탁, 우선수익자 대성신용협동조합, 우선수익한도액 8억 1,9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4. 3. 13. 피고 코리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D,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A·주식회사 학사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7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3. 13. 모두 말소되었다.

3) 그 후 피고 A는 2014. 4. 1. 피고 코리아신탁과 사이에, D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로 D(우선수익한도액 2억 2,5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원고와 피고 코리아신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1,228,165원(= 대위변제금 20,942,785원 + 추가보증료 89,410원 + 대지급금 195,970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후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리아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피고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은 2014. 3. 11.,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은 2014. 4. 1.로써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인 2015. 6. 30.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 A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A의 대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인데, 피고 코리아신탁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14. 3. 13.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것을 보면, 피고 A는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코리아신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지연

별지